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 용자대상 및 용자조건등의 미비점 보완 및 발전적으로 개선

□ 주요골자

- 용자대상사업 확대 및 우선순위의 설정
 - 도로사업등 공기업대상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용자 확대
 - 용자우선순위 사업에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등) 추가
- 용자조건외 개선

용 자 이 율 조 정	용 자 기 간 조 정
상·하수도사업 : 년 6.5%~7%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기 타 사 업 : 년 8%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기 타 사 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기금전입에 의한 회전기금 운영
 - 의무출연외의 도비를 기금에 전입, 별도로 공기업대상이 아닌 사업등에 별도조건으로 구분용자 운영
- 자치단체 매출공채의 지역개발공채로의 일원화 및 전액출자법인 공채소화기관으로 추가
- 기금 용자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규정이 중복 승인(지방채승인)규정으로 삭제
- 도직제 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 첨 부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3조제2항중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를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군과”를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로 하고, 종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중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9조중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용자하되”로 한다.

제10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상·하수도사업 : 년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

②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타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제10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목적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용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용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 (재원조달)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용자금 3.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자금 <p>7. “신설”</p> <p>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방채의 소화)①지방채의 소화는 참가소화방법에 의하여</p>	<p>제3조 (재원조달)①“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로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p> <p>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p> <p>②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방채의 소화)①</p>

현행	개정
<p>도·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u>도·시·군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자에게</u>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u>동일 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u> 다만, 조례에 의한 지방채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p> <p>.....</p> <p>..... <u>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u> 건설공사,</p> <p>.....</p> <p>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소화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지방채를 소화할 수 있다.</p>	<p>④“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8조 (융자대상)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서 제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p>제8조 (융자대상)①“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상환을 위한 차환자금</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u>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u> 기금을 <u>용자할 수 있다.</u></p> <p>제9조 (용자순위)기금자금은 <u>상·하수도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u>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용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한다.</p> <p>제10조 (용자조건)①용자금의 이율은 <u>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따라</u> 년 7%이상 8%이하로 하되, <u>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도지사가 결정한다. <u>다만, 시·군에</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u>기금을 용자할 수 있다.</u></p> <p>제9조 (용자순위) <u>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용자하되</u></p> <p>제10조 (용자조건)①용자금의 이율은 <u>다음과 같이 하되,</u>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p> <p>1. <u>상·하수도사업 : 년리7%,</u> <u>다만 사업사업으로 부채이자</u></p>

현행	개정
<p>용자할 경우에는 시에 대한 용자이율은 최고이율, 군에 대한 용자이율은 최저이율로 하는 등 용자금의 이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p> <p>②용자금은 용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용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p> <p>2. 여타사업 : 년리 8%</p> <p>②용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p> <p>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p> <p>2.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p> <p>3. 기타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p> <p>③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p>

현행	개정
<p>“신설”</p> <p>제11조 (기금자금의 관리)①기금의 여유자금은 하반기에 용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년도 지방채 매출수입금은 9월이전에 인출을 억제한다. 다만, 도·시·군의 재정상태와 용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p>	<p>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p> <p>제11조 (기금자금의 관리)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용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용자 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생략”</p> <p>③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집중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p> <p>제15조 (위원장 및 위원)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보건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과장 등 관계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p> <p>③“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p> <p>제15조 (위원장 및 위원)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도시개발과장</p> <p>.....</p> <p>③“현행과 같음”</p>